

[] 화폐성외화자산등
[] 특별계정
[]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
[]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

평가방법 신고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신 고 인	법 인 명	사업자등록번호
	본점 소재지	
	대표자 성명	
	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	
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	[]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	
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	[]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	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 신고	[] 개별법 [] 총평균법 [] 이동평균법 [] 시가법	
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또는 변경 신고	평가방법 (합병법인의 당초 평가방법)	변경 평가방법
	[] 개별법	[] 개별법
	[] 총평균법	[] 총평균법
	[] 이동평균법	[] 이동평균법
[] 시가법	[] 시가법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3항·제4항·제5항 및 제76조제1항·제2항·제6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, 화폐성외화자산등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 (변경)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,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·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·통화스왑·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,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. 다만,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-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-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.